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4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최기찬, 강석주, 김 경,
김기덕, 김영철, 김태수,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철성, 송도호, 왕정순,
유만희, 이병도, 이상훈,
이영실, 이원형, 임종국,
정준호 의원(19명)

1. 제안이유

- 2023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연도별 층간소음, 층간흡연 민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층간흡연 민원은 22년 3만 5천여 건으로, 20년 2만 9천여 건에 비해 20% 가까이 폭증하는 등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공동생활주택에서 주민 간 지속적 갈등을 야기하는 고질적 문제임.
- 특히 층간 흡연의 경우 환기구 등 배기구를 통해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쳐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우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에도 관리실 전화 및 공동 방송 등을 통한 자제 요청 외에 현실적 해결방안이 없어 ‘층간 소음’에 버금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음.
- 또한 층간소음과 달리 층간 흡연의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간 갈등만 야기할 뿐 그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이에 조례개정을 통해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이웃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최소한의 피해구제 및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대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6항의 신설).
- 나.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6호의 신설) .
- 다.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및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집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신설).
- 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우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표창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2항의 신설).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장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

제7조의2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5.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집 및 배포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책무) ① ~ ⑤ (생략) <u><신설></u>	제3조(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시장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u>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u>6.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u> <u>7. (현행 제6호와 같음)</u>
제7조의2(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시장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7조의2(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u> <u>5.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u>

4. (생 략) 제17조(표창) ① (생 략)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른다.	<u>집 및 배포</u>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7조(표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2항제6호	×	◦ 종합계획 수립 시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내용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제7조의2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	◦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태 조사방법을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간접 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집 및 배포에 대한 통상적인 유사사례를 참고자료 ¹⁾ 로 제시함
3	제17조(표창)	△	◦ 표창수여 인원 등이 정확하지 않아 기술적 추계는 어려움 다만, 관련한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세대내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 해결을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피해방지 제도 마련 및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방법 및 갈등 해소 등을 위한 사례 수집범위 및 발간규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술적 비용추계가 어려움

1) [참고자료] 2024년도 유사사업 예산 현황

조·항	사업명	예산액
제7조의2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 59,000천원 = 주택임대차관련 사례집 제작(전세사기 등), 홍보 등 59,000,000원
제17조 (표창)	울지연습 준비 및 실시 관련 유공자 표창	= 220천원 = 5,500원 × 40매 * 산출방법 : 표창단가 × 수여 수량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l004@seoul.go.kr